

【고 시】

- 정선군 고시 제2019-101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2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19-536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4
- 정선군 공고 제2019-562호 정선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
(안) 입법예고.....11
- 정선군 공고 제2019-565호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정선군 암헌 후원의 집 관리 조례」 등 일괄개
정조례안 입법예고.....23
- 정선군 공고 제2019-568호 2019년도 마을관리휴양지 지정 공고.....24

□ 발행 : 정선군청 기획실 (전화:560-2213, FAX:560-2592)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19-101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건물 등의 멸실로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4일

정 선 군 수

○ 도로명주소 폐지

연번	도로명주소	폐 지 일	폐지사유	비 고 (관련지번)
1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1길 1	2018. 7. 5.	건물 멸실	사북읍 사북리 351-14
2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1길 1-1	2018. 7. 5.	건물 멸실	사북읍 사북리 351-13
3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1길 3-2	2018. 11. 14.	건물 멸실	사북읍 사북리 351-17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민원과(☎560-218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19-536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10일

정 선 군 수

1. 공람목적 :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안) 주민의견 청취
2. 위 치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46-27번지 일원
3. 군관리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안)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	주차장	정선읍 봉양리 46-27번지 일원	-	증)1,086	1,086	금회	

4. 군관리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안) 도 : 게재 생략(공람장소 비치)
5. 관련도서 비치 및 공람장소 : 정선군청 도시과, 정선읍사무소
6. 열람기간 : 신문게재 다음날부터 14일(2019. 5. 10 ~ 5. 26)
7. 의견제출 장소 및 방법 : 정선군청 도시과
8. 기타사항 : 문의사항은 정선군청 도시과(033-560-21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공람·공고(안)은 최종 결정된 내용이 아니며,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안)
공람 · 공고 열람자 의견서

공 랑 건 명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안)		접수번호	
			접 수 일	2019. . .
공 랑 인 인 적 사 항	주 소			
	성 명			
	연 락 처			
토 지 소 재 지	위 치	작성 안함		
	면 적	작성 안함		
	기 타 사 항	작성 안함		
공 랑 의 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 따라 열람·공고한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
 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인)

정 선 군 수 귀 하

정선군 공고 제2019-562호

정선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정선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5월 10일

정 선 군 수

1. 제정이유

- 「정선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정선군 사북장례식장의 사용신청·승인 및 사용료 감면신청 사항의 규정이 필요함.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2(장례식장의 임대료 등)

2. 주요내용

- 정선군 공설장례식장인의 사용신청 및 사용료 감면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장례식장 사용신청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2조,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3조, 별지 제1호서식)

3. 제정 규칙안 : 별첨

4. 입법예고 : 2019. 5. 10~ 5. 30.

5. 의견제출

이 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30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복지과장)에게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복지과

- 연락처 : 전화(033-560-2971), 팩스(033-560-2588)
- 주 소 : (2316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복지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정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규칙 제 호

정선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정선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승인) ① 「정선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 6조에 따라 정선군 공설장례식장(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을 사용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설장례식장 사용(변경)신청서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장례식장 사용(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장례식장 사용 승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3조(사용료 감면)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이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2. 자활근로자 확인서
3. 기타 무연고 사망자 확인 서류

제4조(기타사항)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정선군 공설장례식장 사용(변경) 신청서

신 청 자 (유 족)	성 명		생년월일	-		
	사망자와 의 관계		연 락 처			
	주 소					
사 망 자 현 황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		
	주 소					
	사망일시	년 월 일 시 분	사망사유	병사□, 사고사□, 기타□		
	장 소					
사용신청 사 항	빈 소	호실	빈소추가	호실	안치실	호
	빈 소 사용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발인일자	년 월 일	장지	
감면신청 사 항	감면근거	정선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3항				
	제출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기타(무연고 등)□				
변경사항 (변경사유)						

「정선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기타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감면신청에 필요한 서류 1부.

[별지 제2호서식]

정선군 공설장례식장 사용(변경)승인서

신 청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사망자와의관계	
사 망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 망 장 소	
승인내용	안 치 실	호실	년 월 일 ~ 년 월 일	
	빈 소	호실	년 월 일 ~ 년 월 일	
변경사항				
「정선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				

관계법령 발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공설장례식장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 대상과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에서의 시신의 위생적 관리, 가격표의 게시·등록, 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징수 및 구매·사용강요 금지, 교육, 거래명세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 12. 19.>[본조신설 2015. 12. 29.]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2(공설장례식장의 임대료 등)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장례식장의 임대료와 수수료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 8. 30.]

정선군 공고 제2019-565호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정선군 암헌 후원의 집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정선군 암헌 후원의 집 관리 조례」 등을 일괄 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2019년 5월 14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장애등급제 폐지가 2019. 7. 1자로 시행(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개정)됨에 따라 장애등급제 용어를 인용하고 있는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별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장애등급제 관련 용어 개정
- 개정내용

연번	현 행	개정(안)	비고
1	장애등급	장애 정도	
2	장애 ‘1 ~ 3급’	‘심한 장애’	
3	장애 ‘4 ~ 6급’	‘심하지 않은 장애’	
4	장애 ‘1 ~ 6급’	‘등록장애인’	

3. 일괄개정조례안 : 별첨

4. 입법예고 : 2019.5.14.~5.21.

5.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정선군수(참조:복지과장,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복지과(전화:033-560-2932,FAX:560-2588,E-mail: byk01146@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장애등급제 폐지 관련 일괄개정 자치법규 목록

□ 조례안 : 7건

연번	자 치 법 규 명	소관부서
1	정선군 암헌 후원의 집 관리 조례	복지과
2	정선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복지과
3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세무과
4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환경과
5	정선군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문화관광과
6	정선군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및 운영 조례	문화관광과
7	정선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경제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암헌 후원의 집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 성	반 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정선군 암헌 후원의 집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정선군 암헌 후원의 집 관리 조례』의 개정)

정선군 암헌 후원의 집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자중 1급 내지 3급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제2조(『정선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정선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장애급수가 높은 자”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제3조(『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1급에서 3급까지 등록된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제4조(『정선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의 개정)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3항 중 “1~3급”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으로 한다.

제5조(『정선군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정선군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0호 중 “장애인으로서 시장·군수 도”를 “등록장애인으로 시장·군수 또”로, “장애 인”을 “장애인”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의 경우 돌보는 사람 1명”을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6조(『정선군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정선군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4호 전단 중 “장애인으로서”를 “등록장애인으로”로, “증명을 소지한 사람”을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과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호 후단을 삭제한다.

제7조(『정선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의 개정)

정선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정선군 암헌 후원의 집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행	개정안
제5조(입주자 선정) ① (생략)	제5조(입주자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4조제1항의 입주자격을 가진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우선하여 입주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자중 1급 내지 3급장애인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정선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행	개정안
제5조(이용대상 및 선정순위) ① (생략)	제5조(이용대상 및 선정순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중 <u>장애인</u> 희망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수탁자가 결정한다.	②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장애급수가 높은 자</u>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3. (생략)	3.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2. (생 략)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1급에서 3급까지 등록된 장애인 4. ~ 10. (생 략) ② (생 략)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 ----- -----. 1. 2. (현행과 같음)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 1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3(입장료 및 사용료의 감면) ① ~ ② (생 략) ③ 65세 이상인 자,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30 감면한다.	제12조의3(입장료 및 사용료의 감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

신·구조문 대비표

<정선군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행	개정안
제7조(관람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대하여는 제4조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 9. (생략) 10.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과 <u>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의 경우 돌보는 사람 1명</u> 11. · 12. (생략)	제7조(관람료 면제) ----- -----. 1. ~ 9. (현행과 같음) 10. ----- <u>등록장애인으로 시장·군수 또는</u> <u>----- 장애인 -----</u> <u>----- 보호자</u> <u>1명을 포함한다.</u> 11. · 12.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정선군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관람료 및 면제) ① (생 략)	제10조(관람료 및 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u>장애인으로서</u>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장애인 증명을 소지한 사람.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그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4. ----- <u>등록장애인으로</u> ----- ----- <u>등록</u> <u>증을 소지한 사람과 보호자 1명</u> <u>을 포함한다. <후단 삭제></u>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정선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행	개정안
제6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군에 주소를 두고 도시가스를 공급받 고자 신청하는 다음 각 호의 주 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한다. 다만, 세입 자가 도시가스 공급 요청시 주 택 및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한 다.	제6조(지원대상) ① ----- ----- -----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 3급 장애인	5.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 ~ 8. (생략)	6. ~ 8.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② 삭제 <2017. 2. 8.>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그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⑧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장애 정도의 심사 대상 등)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사람의 장애 정도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받아 장애 정도가 정해진 사람.
다만,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신청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65세 이상인 사람
3. 그 밖에 장애 상태의 변화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 장애 정도를 심사하지 아니할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 대상자의 장애 정도에 대하여 심사를 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하여 심사 대상자의 장애 정도가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 등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 정도 심사의 세부적인 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 방법 및 기준에 따른다.

정선군 공고 제2019-568호

2019년도 마을관리휴양지 지정 공고

「정선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마을관리휴양지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 다 음 -

명 칭	위 치	면적(km ²)	지정일	운영기간	비고
항골계곡 마을관리휴양지	북평면 북평리 산1	2,248m ²	2019. 5. 15.	2019.06.20. ~ 2019.09.10	
줄 드 루 마을관리휴양지	북평면 나전리 429	6,479m ²	2019. 5. 15.	2019.05.15. ~ 2019.10.31	

2019년 5월 15일

정 선 군 수